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6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이승모 · 최상훈



##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42%	27번	(독서 : 사회) - 지문에 제시된 개념 비교 추론
오답률 4위	46%	19번	(독서 : 인문) - 지문 개념 연결 및 세부 추론
오답률 3위	50%	29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2위	56%	41번	(독서 : 과학) - 지문 내용과 <보기>의 개념 연결 및 추론
오답률 1위	60%	40번	(독서 : 과학)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고전시가 : 작자 미상, ‘갑민가’ / 현대시 : 이용악, ‘오랑캐꽃’

[문법] 12번, 13번, 14번

[독서] 사회 지문 : 행정 처분과 취소 소송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42%) 예측] : 독서-사회 27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에 제시된 개념 비교 추론]

27.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허용되는 경우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상대방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에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③ ㉠과 ㉡은 모두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야 허용된다.
- ④ ㉠과 ㉡은 모두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야 허용된다.
- ⑤ ㉠과 ㉡은 모두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보다 선행하는 기존의 처분에 의해 형성된 이해관계가 있어야 허용된다.

[정답 : ⑤]

[Killer-Point]

⑤번 선지를 보고 정답을 고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 '이웃 소송'과 ㉡ '경업자 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답 선지를 고르는 것보다 ①~④번의 오답 선지들을 넘기고 ⑤번 선지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웠을 수 있다. '이웃 소송'과 '경업자 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b>공통점</b>	처분 당사자 외에 제3자의 이익이 고려된다(=제3자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 제3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원고가 될 수 있다). ⇒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b>차이점</b>	<b>이웃 소송</b>	<b>경업자 소송</b>
	이번에 내려진 처분의 효과가 1. 처분 당사자 : 수익적 2. 제3자 : 침익적  = 관련 처분 1개	기존 처분 당사자(=제3자) VS 이번에 내려진 처분 당사자  = 관련 처분 2개

③~⑤번 선지는 모두 공통점을 묻는 선지였다.  
③, ④번 선지는 위의 표에 나온 공통점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반면 ⑤번 선지의 경우는 '두 개의 처분'이 관련된 상황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경업자 소송'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된다.

[유사한 사례] - 2016년도 10월 학력평가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의 표장(標章)을 말한다.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명칭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

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 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표장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통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그것은 이미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경쟁 업자들의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막아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다.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 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3. 밑줄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상표법 제53조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디자인권 등과 저촉\*되는 경우, 그 상표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등록 상표를 남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금지권은 유지되므로,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촉 :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가 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됨.

- ① ㉠과 ㉡는 모두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 ② ㉠은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는 그렇지 않다.
- ③ ㉠은 소유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는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
- ④ ㉠은 출원된 뒤부터 상표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는 출원 이전이라도 해당 소유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 ⑤ ㉠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는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

[정답 : ⑤]

[오답률 4위(46%) 예측] : 독서-인문 19번 문항

[지문 개념 연결 및 세부 추론]	
[Killer-Point]	<p>19. &lt;보기&gt;는 윗글을 읽고 쓴 글이다. ㉠~㉥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lt; 보기 &gt; _____</p> <p>“설록 흠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분석하려고 한다. ㉠ 크립키에 따르면 스토리에 관한 담화에서 ‘설록 흠즈’는 추상체를 지시한다. ‘존재한다’가 현실의 시공간에 위치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이라면 ㉡ 스토리에 관한 담화에서 이 문장은 참이 될 것 같다. 새면의 이론을 적용하면 ‘설록 흠즈’는 항상 작가가 창조한 추상체를 가리킨다. ㉢ 따라서 새면의 이론을 적용해도 이 문장은 참이라고 판단될 것이다. 반면 ㉣ 우리는 월튼이 말한 것처럼 소설을 읽을 때 ‘설록 흠즈’가 존재한다고 상상하도록 요구받는다. 따라서 월튼의 이론을 적용할 경우, 이 문장이 이야기 속 상황에 관한 진술이라면 거짓이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 이야기 밖 상황이라면 이 문장은 진위를 가릴 수 없을 것 같다. ㉤ 이야기 안 상황과 달리 이야기 밖 상황에서는 ‘설록 흠즈’의 지시 대상이 없다는 월튼의 주장 때문이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① ㉠                      ② ㉡                      ③ ㉢                      ④ ㉣                      ⑤ ㉤</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b></p> <p>이 문제를 틀렸거나, 시간을 오래 쓴 학생이라면, 첫 번째 문장의 “설록 흠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명제는 “설록 흠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다.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선지 판단 과정에 들어가면, ㉤에서부터 판단이 꼬였을 수 있다. 지문도 마찬가지로 선지도 마찬가지로겠지만, &lt;보기&gt;에 들어갈 때 처음 부분에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로 들어가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항상 앞부분부터 꼼꼼하게 읽어주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필요하다. 월튼의 ‘믿는 척하기 이론’은 ‘설록 흠즈’의 지시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야기 안 상황이든 이야기 밖 상황이든, ‘설록 흠즈’의 지시 대상이 없다고 본 것이 월튼의 생각이다.</p>
<b>[유사한 사례] -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b>	
<p>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인 세계관은 곧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므로, 우리는 최대한 정합성과 근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시킬 것이므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중요하다. 세계관을 이루는 여러 신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이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에 관한 다른 신념, 이를테면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p> <p>실재론은 이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반실재론자는 이 상식에 도전한다.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관한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p>	

버클리 주장의 우리의 통념과 충돌한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을 차면서 “나는 이렇게 버클리를 반박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날아간 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버클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재론자들이 부정한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돌을 찬 사람은 그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증의 성패를 떠나 반실재론자는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은 그 자체로 인간 지성이 상호 소통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26.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 ②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 체계이다.
- ③ 실재론과 달리 반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④ 세계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세계가 불변한다는 신념보다 더 근본적이다.
- ⑤ 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의 존재는 정신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 ③]

**[오답률 3위(약 50%) 예측] : 독서-사회 29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29.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Killer-Point]

< 보 기 >

행정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정기적으로 각 지역 토지의 가치인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처분을 내린다. 국가는 공공시설 등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 수용 결정 처분을 한 뒤 소유자로부터 공시지가에 토지를 매수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수용 결정이 있은 후에야 공시지가를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 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가능 기간이 지난 후,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 토지 수용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유로 토지 수용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원은 공시지가 산정이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동시에 토지 수용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 구제 방안을 넓히고 있다.

- ① 공시지가 산정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침익적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론이겠군.
- ② 공시지가 산정은 토지 수용 결정 처분 이후에야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에게 침익적 효과가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한 결론이겠군.
- ③ 토지 수용 결정은 공익과 관련된 처분으로 근거 법률에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고려한 결론이겠군.
- ④ 토지 수용 결정은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성만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론이겠군.
- ⑤ 공시지가 산정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이 토지 수용 결정 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결론이겠군.

[정답 : ②]

<보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보기>에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수용 결정이 있는 후에야 공시지가를 인식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납득하지 못하고 생각이 꼬여버릴 수 있다. 먼저 <보기>에 제시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자.

‘공시지가 = 땅값’ / ‘투지 수용 결정 처분 = 땅 판매’와 같이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국가는 토지의 공시지가, 즉 땅값을 매긴다. 그리고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땅 주인에게서 땅값에 맞게 땅을 산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공시지가 산정 처분 ⇨ 토지 수용 결정 처분]

문제는 땅 주인들이 땅값을 모른다는 것이다. 땅 주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정부에 판다는 처분이 내려지고 난 후에야 자신들의 땅값을 알게 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공시지가 산정 처분 ⇨ 토지 수용 결정 처분 ⇨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인식]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내가 땅을 10평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을 정부에 팔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나는 그때까지 땅값을 평당 100원, 10평이니 1000원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땅을 팔라는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나는 내 땅값이 평당 10원, 10평에 100원으로 매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00원에 땅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100원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가격에는 안 판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시지가 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가능 기간(1년)은 지난 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이 공시지가로는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토지 수용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보기>의 상황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이다.

결론 1 : 이 경우 법원은 공시지가 산정이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결론 2 : 토지 수용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원의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구제 방안이 된다. 즉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기서 ‘결론 2’가 중요하다.

공시지가 산정 처분은 처분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이다. 즉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는 공시지가 산정이 토지 수용 결정 처분 이후에야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토지 소유자)에게 침익적 효과가 드러난다는 점, 즉 투지 수용 결정 처분 이후에야 토지 소유자가 공시지가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결론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내 땅값이 얼마인지 팔기로 한 후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때 가서 땅값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오답률 2위(약 56%) 예측] : 독서-과학 41번 문항

## [지문에 제시된 상황의 전제 추론]

41. 윗글과 <보기>를 참고로 할 때, 윗글의 ㉔에 '유도 방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유도 방출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㉔ X의 원자들이 가득 모인 공간에서 일부 원자들이 우연히 들뜬상태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그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극히 짧아 적정량의 진동수를 가진 광자들을 지속적으로 X의 원자들에 조사해도 유도 방출보다 유도 흡수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유도 흡수는 원자가 조사된 광자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도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활한 유도 방출을 일으키려면 X의 원자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들뜬상태의 원자들이 바닥상태의 원자들보다 많은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펌핑이라 한다.

- ① 펌핑을 하기 전에는 유도 방출을 일으킬 수 없다.
- ② 펌핑을 하기 전에도 ㉔에  $E_3$ 의 원자들이 가장 많을 수 있다.
- ③ 펌핑을 하지 않았을 때 유도 방출이 일어나기 힘든 것은 자연 방출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다.
- ④  $(E_4 - E_3)$ 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들을 증폭하려면  $E_3$ 의 원자들이 가장 많아지도록 펌핑을 해야 한다.
- ⑤  $E_2$ 의 원자들이 가장 많아지도록 펌핑을 하고  $(E_3 - E_2)$ 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들을 조사하면 유도 흡수보다 유도 방출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Killer-Point]

[정답 : ③]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거기에 '유도 흡수'라는 새로운 개념도 제시되면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일단 <보기>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지문에서 어떤 개념을 끌고 와야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유도 방출'은 지문 마지막 부분에 나온 개념이다.

원자가 특정한 들뜬상태에 있을 때 그 에너지 준위( $E_2$ )와 그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 $E_1$ )의 차이만큼의 에너지( $E_2 - E_1$ )를 지닌 광자가 입사되면 입사된 광자와 동일한 진동수와 위상을 가진 광자 두 개가 방출되는 현상이 '유도 방출'이다.

그리고 <보기>의 내용을 이어서 정리하면, '유도 방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자들이 들뜬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이 상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가 매우 어렵고, 만들어져도 금방 다시 바닥상태로 돌아가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자를 지속적으로 조사해도 유도 방출보다 유도 흡수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뜬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펌핑'이다.

작은 규모의 문제-해결 구조라고 생각하면 정리가 편하다.

먼저 문제는 '유도 방출'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에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1. 원자들이 자연적으로 들뜬상태가 되는 것은 어렵다.
2. 우연히 들뜬상태가 되어도 곧 다시 바닥상태로 돌아온다. -> 유도 흡수 발생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펄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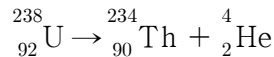
여기서 두 번째 원인(=우연히 들뜬상태가 되어도 곧 다시 바닥상태로 돌아온다.)에서 바닥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은 지문 내용에 따르면 '자연 방출'에 의한 것이 된다.

즉 펄핑이라는 해결책이 없으면 원자가 우연히 들뜬상태가 되어도, 자연 방출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들뜬상태였던 원자가 바닥상태로 돌아가 버리면서 유도 방출보다 유도 흡수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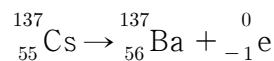
#### [유사한 사례] - 2012년도 10월 학력평가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이지만, 원자 번호가 83을 초과하면 양성자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이 커져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원자핵은 자발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여 안정된 다른 종류의 핵으로 변환하려고 한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으며, 이와 같은 방사선을 방출하여 안정된 다른 종류의 원자핵이 되는 현상을 방사성 원소의 붕괴라고 한다.

알파 붕괴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질량수가 큰 불안정한 원자핵들이 질량수가 작은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핵인데, 이것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방사성 원소가 알파 붕괴를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각각 두 개씩 줄어들어, 원자 번호는 2만큼 감소하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인 질량수는 4만큼 감소하게 된다. 92개의 양성자와 146개의 중성자를 가진 우라늄 238이 알파 붕괴를 하면 90개의 양성자와 144개의 중성자를 가진 토륨이 되는데, 이를 아래와 같은 핵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베타선을 방출하는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불안정한 원자핵이 중성자의 수를 줄여 보다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베타 붕괴를 할 때에는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변한 다음, 양성자는 핵에 그대로 남고 전자만 외부로 방출된다. 이 경우 사라지는 중성자 대신 양성자가 하나 생기게 되므로 원자 번호는 하나 증가하지만 질량수는 변화가 없다. 55개의 양성자와 82개의 중성자를 가진 세슘이 베타 붕괴를 하면 56개의 양성자와 81개의 중성자를 가진 바륨이 되며, 그 핵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감마선을 방출하는 감마 붕괴는,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를 통해 새로 생긴 원자핵이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 있을 때 안정된 상태로 변하기 위하여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감마 붕괴는 원자 번호와 질량수에 변화가 없고,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와 연동하여 발생된다. 즉, 알파선과 감마선이 함께 방출되거나 베타선과 감마선이 함께 방출된다.

자연 방사성 원소는 납과 같이 안정된 물질에 이르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정된 원자핵일 지라도 입자 가속기에서 나온 고속의 입자를 충돌시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주면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공적 방사성 원소는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값도 비싸지 않아 과학적인 탐구나 산업, 의료 활동 등에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방사선은 생명체를 통과하면서 전리(電離)\* 현상을 일으켜 세포의 분열 저해, 돌연 변이, 조직의 파괴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달리 방사성 원소를 많이 취급하는 사람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전리: 전하를 띠는 양이온 또는 음이온으로 됨.

20.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퀴리 부인은 자연 방사성 원소인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이와 같은 방사성 원소를 지속적으로 실험하다가 결국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류는 방사선의 유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원폭 피해 환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 증가의 구체적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100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을 비롯한 암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① 퀴리 부인은 방사선의 전리 현상 때문에 병을 얻게 되었군.
- ② 일반인은 자연 상태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겠어.
- ③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 현상은 인공적 방사성 원소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군.
- ④ 퀴리 부인은 자연 방사성 원소를 발견할 때 고속의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았겠군.
- ⑤ 병원의 방사선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야.

[정답 : ③]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는 자연 방사성 원소에서 나온 방사선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방사선이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요인은 생명체를 통과하는 방사선의 양에 달려 있다.

[오답률 1위(약 60%) 예측] : 독서-과학 40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형광등은 진공 상태의 좁은 유리관에 수은 등을 넣고 유리관 안벽에 형광물질을 발라 만든다. 점등을 하면, 유리관 끝에 설치한 음극에서 전자들이 빠르게 튀어나온다. 이 전자들이 바닥상태의 수은 원자에 부딪치면 수은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들뜬상태가 된다. 들뜬상태의 수은 원자는 바닥상태로 떨어지면서 자외선을 이루는 광자를 방출하고, 이 자외선 광자가 바닥상태의 형광물질 원자에 닿아 흡수되면 형광물질 원자가 들뜬상태가 되었다가 바닥상태로 떨어지면서 가시광선을 이루는 광자가 방출된다. 단,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다.

[Killer-Point]

- ① 형광등의 불빛은 일정한 방향 없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겠군.
- ② 형광물질의 원자는 흡수한 에너지와 동일한 에너지를 광자의 형태로 방출하겠군.
- ③ 수은 원자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진동수는 형광물질 원자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진동수보다 크겠군.
- ④ 수은 원자가 들뜬상태로 도약한 것은 어떤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이겠군.
- ⑤ 자외선 광자의 에너지가  $\alpha$ 라면, 수은 원자와 형광물질 원자는 모두  $\alpha$ 만큼의 차이가 있는 두 에너지 준위를 가지겠군.

[정답 : ②]

41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읽을 때는 지문의 어떤 개념을 끌고 들어와야 할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40번 문제에서 <보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유도 방출'의 개념을 끌고 들어온 학생들은 선지 판단 과정에서 고민이 길어졌을 수 있다.

반면 <보기>의 '형광등'을 보고 3문단의 내용을 떠올린 학생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3문단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 외에도 <보기>에 제시된 5개의 단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정리해보자.

1. 유리관 끝 음극에서 전자 방출
2. 전자, 수은 원자 충돌 ⇨ 수은 원자 들뜬상태
3. 수은 원자 자연 방출 = 자외선 광자 방출
4. 형광물질 원자 자외선 광자 흡수 ⇨ 형광물질 원자 들뜬상태
5. 형광물질 원자 자연 방출 = 가시광선 광자 방출

형광등에서 바닥상태의 형광물질 원자는 수은 원자에서 방출된 자외선 광자를 흡수하여 들뜬 상태로 도약한 다음, 바닥상태로 떨어지면서 가시광선 광자를 방출한다.

그런데 <보기>의 단서에 따르면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다. 파장이 짧다는 것은 에너지가 더 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형광물질 원자는 에너지가 더 큰 광자를 흡수하고 에너지가 더 작은 광자를 방출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어떤 물질은 이 경우에  $(E_3 - E_2)$ 의 에너지가 광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발산되므로  $(E_2 - E_1)$ 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만 방출된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형광물질은 흡수한 만큼 방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전부 광자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은 아닌 물질인 것이다. 일부는 가시광선 광자로 방출하고, 일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발산된다고 볼 수 있다.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았어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2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 1. ‘-았/었-’이 과거 외에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 알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p>㉠ 수호는 엄마를 <u>뒀</u>었다. 이 수박이 잘 <u>익</u>었다. 영희가 예쁜 옷을 <u>입</u>었다. → ‘-았/었-’이 ‘완료’ 또는 ‘완결 지속’을 나타내며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됨</p>	<p>㉡ 너는 내일 소풍은 다 <u>갔</u>다. 너 이제 장가는 다 <u>갔</u>다. 넌 오늘 집에 오면 <u>훈</u>났다. → ‘-았/었-’이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됨</p>

#### 2. ‘-겠-’이 심리적 양태를 표현하는 경우

: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 시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측이나 의지, 확신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 철수는 벌써 도착했겠다. → 과거의 추측  
 그곳엔 지금 눈이 오겠다. → 현재의 추측  
 내일 비가 오겠다. → 미래의 추측  
 내일은 반드시 일찍 오겠습니다. → 의지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 확신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완곡한 어조

### [선택지 해설]

#### 12. ㉡

**정답해설** 답은 ㉡야. 먼저 ㉠의 먼저 ‘과제를 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다.’에서 선어말어미 ‘-았-’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 대신 ‘오늘 밤’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 확정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쓰이고 있어. 즉 해당 문장에서 화자는 자신이 과제 때문에 오늘 밤이라는 미래에 잠을 못 잘 것을 확신하고 ‘과제를 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음으로 ㉠의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에서 선어말어미 ‘-겠-’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 해당 문장은 화자가 어떤 일을 혼자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즉 선어말어미 ‘-겠-’은 미래의 의미가 아닌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

#### [오답풀이]

㉠을 살펴보자. 먼저 ㉠의 ‘들판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다.’에서 선어말어미 ‘-었-’은 과거 어느 시점에 꽃이 피어서 현재까지도 피어있음을 이야기해. 다음으로 ㉡의 ‘지금 그곳에는 눈이 왔겠지.’에서 선어말어미 ‘-겠-’은 미래를 의미하는 대신 눈이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

㉢을 살펴보자. 먼저 ㉠의 ‘감기에 걸려서 아직도 목이 잠겼다.’에서 선어말어미 ‘-었-’은 과거 어느 시점에 감기에 걸려서 현재까지도 감기에 걸려있음을 이야기해. 다음으로 ㉡의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에서 ‘-겠-’은 미래를 의미하는 대신 그런 것은 누구든 쉽게 알 수 있겠다는 가능성,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④를 살펴보자. 먼저 ㉠의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에서 선어말어미 ‘-았-’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 대신 막차를 놓쳤기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는 것이 확정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다음으로 ㉡의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에서 선어말어미 ‘-겠-’은 미래의 의미보다 완곡한 부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선어말어미 ‘-겠-’을 쓰면 ‘주시죠?’와 같이 ‘-겠-’을 쓰지 않은 문장보다 어조가 더 완곡하게 들려.

⑤를 살펴보자. 먼저 ㉢의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에서 선어말어미 ‘-었-’은 ‘나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 즉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어. 다음으로 ㉣의 ‘나는 내일까지 밀린 과제를 끝내겠다.’에서 ‘-겠-’은 미래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과제를 끝내고야 만다는 ‘의지’의 의미를 가져.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피동 접미사

피동 접미사	예
-이-	산이 보인다. 나뭇가지가 꺾이다. 이 글은 두 문단으로 나뉜다.
-히-	성문이 닫히다. 안개가 걷히다. 책장에 책이 꽂히다.
-리-	그림이 벽에 걸리다. 나무에 사과가 달리다. 벽에 구멍이 뚫리다.
-기-	눈이 감기다. 실이 끊기다.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기다.
-되(다)	의견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수익금 전액이 문화 사업에 사용되다. 도시가 형성되다.

2.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	문장의 구성	예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함	주어 + 서술어 (자동사)	꽃이 피었다.
	주어 + 서술어 (형용사)	그녀는 예쁘다.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외에 목적어나 보어, 부사어를 필요로 함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타동사)	소년이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주어 + 보어 + 서술어 (되다/아니다)	은아는 교사가 되었다.
	주어 + 필수적 부사어 + 서술어	동건이는 우성이와 닮았다.
세 자리 서술어 : 주어와 목적어 외에 부사어를 필요로 함	주어 + 필수적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수여동사 철수가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본용언 + 보조용언
	주어 + 목적어 + 필수적 부사어 + 서술어	아버지는 영수를 사위로 삼았다.

3.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 규칙 활용 : 용언 활용 시,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하거나, 변하더라도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 가능한 것

변화 없음	가다, 가고, 가지, 가게, 가라, 가서, 갈, 간 등	
변화 있음	‘ㄷ’ 탈락	쓰- + -어 → 써 끄- + -어 → 꺼
	‘ㄹ’ 탈락	살- + -으니 → 사니 울- + -는 → 우는 날- + -니 → 나니?

· 불규칙 활용 : 용언 활용 시,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고, 그를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①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규칙 활용의 예
‘ㅅ’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함	짓- + -어 → 지어	벗- + -어 → 벗어
‘ㄷ’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뀜	건- + -어 → 걸어	달- + -아 → 달아
‘ㅂ’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ㅂ’이 ‘오/우’로 바뀜	돕- + -아 → 도와	잡- + -아 → 잡아
‘ㄹ’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ㄹ’가 ‘ㄹㄹ’로 바뀜	흐르- + -어 → 흘러	따르- + -아 → 따라
‘우’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함	푸- + -어 → 퍼	주- + -어 → 주어

②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규칙 활용의 예
‘여’ 불규칙	어간 ‘하’ 뒤에서 어미 ‘아/어’가 ‘여’로 바뀜	합격하- + -어 → 합격하여	파- + -아 → 파
‘리’ 불규칙	어간 ‘르’ 뒤에서 어미 ‘어’가 ‘리’로 바뀜	푸르- + -어 → 푸르러	치르- + -어 → 치러
‘너라’ 불규칙	명령형 어미 ‘아/어’가 ‘너라’로 바뀜	오- + -거라 → 오너라	먹- + -거라 → 먹거라
‘오’ 불규칙	‘달-/다-’의 명령형 어미가 ‘오’로 바뀜	달/다- + -아라 → 다오	주- + -어라 → 주어라

③ 어간과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규칙 활용의 예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오면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바뀜	파랳- + -아서 → 파래서	좋- + -아서 → 좋아서

4. 동음이의 관계 (동음이의어)

○ 개념 : 우연히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단어들 가지는 관계를 ‘동음이의 관계’라고 하고,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 ‘동음이의어’라고 함

예) 추운 날 길을 매려 나왔더니, 입에서 길이 난다.

바다에 떠 있는 저 배는 배를 싣고 간다.

[선택지 해설]

13. ㉓

정답해설 답은 ㉓이야. 먼저 '가르다'와 '갈리다3'의 뜻을 봐야 해. 둘의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야 하는 거야. '가르다'는 '쪼개거나 나누다'따로따로 되게 하다'라는 의미이며 '갈리다3'은 무엇인가가 '바뀌다'라는 의미야. 둘의 의미가 연관성이 없어. 만약 '갈리다'가 '가르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거라면 둘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이 있어야 해. 이를 통해 우리는 '갈리다3'가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라는 의미의 '갈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임을 짐작할 수 있어. 그러므로 선지에서 '갈리다3'이 '가르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복합어라는 것은 틀렸어.

[오답풀이]

- ①을 살펴보자. '가르다'의 문형 정보를 보니 1의 의미는 '~을 ~으로'의 문형 정보를, 2의 의미는 '~을'이라는 문형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사전에서 문형 정보를 통해 서술어의 자릿수를 확인하려면 문형 정보에 주어 한 자리의 수를 더하면 돼. 예를 들어 해당 단어가 '~을 ~으로'의 문형 정보를 가졌다면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형 정보에 나타난 두 개의 자릿수에 주어 한 개의 수를 더한 '세 자리 서술어'가 돼. 정리하면 '가르다 1'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세 자리, '가르다 2'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두 자리가 되는 거야.
- ②를 살펴보자. 먼저, '가르다'를 용례에 있는 '갈랐다'로 활용하면 '가르- + -았- + -다'로 분석할 수 있어. 이때 어간 '가르-'에서 '르' 부분이 'ㄹ'로 변해서 하나는 앞 음절 '가-'에 붙어 '갈-'이 되고, 하나는 뒤의 음절 '-았-'에 붙어 '-랐-'이 돼. 이는 어간의 불규칙 활용인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 해. 반면 '갈리다2'를 용례에 있는 '갈렸다'로 활용하면 '갈리- + -었- + -다'가 돼. 이때 '렸-'은 '리-'와 '-었-'이 축약한 결과로 규칙 활용에 해당하고,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처럼 '갈리다2'가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갈리다2'가 '갈리어, 갈리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
- ④를 살펴보자. '갈리다2'는 '~으로 쪼개지거나 나뉘어져 따로따로 되다'라는 의미로, ㉑의 용례로 '의견이 세 편으로 갈리다.'가 가능 해. 이는 해당 문장이 '의견이 세 편으로 나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야.
- ⑤를 살펴보자. '갈리다2'와 '갈리다3'은 각각 '쪼개어지거나 나뉘어져 따로따로 되다'와 '다른 것으로 바뀌다.'라는 의미로 의미적 연관성이 없어. 이에 둘은 각각 다른 표제어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이처럼 서로 간에 의미적 연관성이 없고 각각 다른 표제어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둘이 다른 단어라는 의미야. 그런데 이렇게 둘이 의미적으로 다른 단어인데 우연히 형태가 같은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해.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0)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음운 개수가 하나 늘다.(+1)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1. 음절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고 연음.

받침	대표음	예시
ㄱ, ㅋ, ㆁ	ㄱ	국[국], 밖[밖], 부엌[부억]
ㄴ	ㄴ	소원[소원]
ㄷ, ㅌ, ㅊ, ㅍ, ㅌ, ㅍ, ㅎ	ㄷ	날, 날, 낮, 낮, 낮, 낮, 날 → [날]
ㄹ	ㄹ	말[말], 발[발]
ㅁ	ㅁ	감[감]



ㅂ, ㅍ	ㅂ	입, 잎 → [입]
ㅇ	ㅇ	강[강]

2. 유음화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비음	환경	결과	예시
ㄴ	ㄹ 앞이나 뒤	[ㄹ]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뚫는 → [뚫는 → 뚫른]

3. 비음화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파열음	환경(비음)	결과	예시
ㄱ	ㄴ, ㅁ 앞	[ㅇ]	국물[궁물], 낚는다[낙는다→냥는다], 부역문[부억문→부영문]
ㄷ	ㄴ, ㅁ 앞	[ㄴ]	닫는[단는], 걸모양[견모양→건모양], 쫓는[쫘는→쫘는]
ㅂ	ㄴ, ㅁ 앞	[ㅁ]	밥물[밤물], 앞니[압니→암니], 값만[갑만→감만]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뀜(①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음	환경	결과	예시
ㄹ	ㄹ 이외의 자음 뒤	[ㄴ]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논→망논]

[참고] 결국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기억하면 좋다.

유음화, 비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4. 구개음화 : 받침 'ㄷ, ㅌ(ㄹ)'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동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으로, 어떤 음이 인접해 있는 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모음 'ㅣ'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구개음(경구개음)인데, 'ㅣ'와 거리가 먼 'ㄷ, ㅌ'이 'ㅣ'와 거리가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되어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뀐 것이므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현상이다.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ㄷ, 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ㅈ, ㅊ]	굳이 → [구지], 밭이 → [바치],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참고 1] 구개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것이다.

[참고 2] 구개음화는 ① 통시적 변화 ② 자음 축약과의 비교(달히다[다치다] vs 꽃히다[꼬치다])까지 알아두면 좋다.

5. 된소리되기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는 매우 생산적인 음운 변동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ㄱ, ㄷ, ㅂ, ㅅ, ㅆ → [ㄲ, ㄸ, ㅃ, ㅆ, ㅉ] / ①, ②, ③
① ㄱ, ㄷ, ㅂ 뒤
예) 국밥 → [국뻘], 꽃병 → [꽃뻘], 값도 → [갑똥]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ㄱ, ㄷ, ㅂ'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어간의 끝 자음 ㄴ, ㄹ 뒤  
 예) (동생을) 안고 → [안꼬], (신발을) 신고 → [신킨꼬], (의자에) 앉고 → [안꼬]

-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의 'ㄴ, ㄹ'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체언의 끝 자음 'ㄴ, ㄹ'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신고(申告)[신킨고]

- 피동, 사동 접사 '-기-'의 첫 자음은 이 변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안기대[안기대]: 안 + -기 + -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예) 할 것을 → [할꺼술], 갈 데가 → [갈떼가], 만날 사람 → [만날싸람]

-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ㄹ걸', '-ㄹ밖에', '-ㄹ게', '-ㄹ수록', '-ㄹ세라', '-ㄹ지라도' 등은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형태로, 발음상으로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④ ㄷ, ㅅ, ㅆ → [ㄸ, ㅆ, ㅆ]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  
 예) 갈등 → [갈똥], 말살 → [말쌀], 열정 → [열똥]

-----교체

**6.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우리말에서 음절 말 위치에 놓이는 자음은 하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나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경우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된다. 예) 앉으면 → [안즈면]

[주의] 쌍자음 'ㄱ, ㅆ'은 겹받침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겹받침	환경	결과	예시
체언의 겹받침 ㄱ, ㄷ, ㅂ, ㄴ, ㄹ	어말 또는 자음 앞	[ㄱ, ㄷ, ㅂ, ㄱ, ㄹ]	넋 → [넹], 여덟 → [여덜], 값 → [갹], 닭 → [대], 삼 → [삼]
어간의 겹받침 ㄴ, ㄹ, ㄷ, ㄹ, ㅂ, ㄴ, ㄹ	자음 앞	[ㄴ, ㄴ, ㄹ, ㄹ, ㅂ, ㅂ, ㄹ]	안고 → [안꼬], 많네 → [만:네], 할고 → [할꼬], 앓는 → [알른], 없고 → [업:꼬], 굶다 → [굸:따], 읊다 → [읍:따] 단, 'ㄴ, ㄹ'의 'ㅎ'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되기도 한다. 예) 많다 → [만타]

[참고] 특이한 겹받침 발음(알아두자)

- 어간의 겹받침 ㄹ → [ㄹ] / ㄱ 앞 예) 읽고 → [일꼬], 맑게 → [말께]  
 ㄹ → [ㄱ] / ㄱ 이외의 자음 앞 예) 읽다 → [익따], 맑다 → [막따]
- 어간의 겹받침 ㄷ → [ㄹ] / 자음 앞 예) 넓고 → [널꼬], 짧게 → [잘께]  
 ㄷ → [ㅂ] (뱃-/ 자음 앞, 넓죽하다, 넓둥글다)  
 예) 뱃고 → [뱃꼬], 넓죽하다 → [넙쭈카다], 넓둥글다 → [넙똥글다]  
 ⇒ 'ㄷ'은 주로 'ㄹ'이 남으나, 자음 앞에 나타난 '뱃-'과,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ㄷ'은 'ㅂ'이 남는다.

-----탈락

**7.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ㄱ, ㄷ, ㅂ, ㅅ → [ㅋ, ㅌ, ㅍ, ㅊ] 예) 놓고 → [노코], 앓던 → [안텐], 실지 → [실치]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ㅊ] 예) 낙하산 → [나카산], 말형 → [마텃], 값 흥정 → [가퉁정]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자음이 거센소리되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축약

8. ‘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두 단어나 구를 휴지 없이 발음할 때에도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ㄴ’ 첨가 현상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석유 → [서규], 송별연 → [송 : 버련]

∅ → [ㄴ] / 받침 자음 + ㅣ 또는 반모음 [i] 예) 맨 + 입 → [맨닙], 색 + 연필 → [생년필]

[주의] ‘ㄴ’ 첨가는 항상 엄두에 두는 것이 좋다. 특히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의 경우에는 ‘ㄴ’의 형태가 발음에 보이지 않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발야구[발랴구]의 경우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지만 발음에는 ‘ㄴ’ 밖에 보이지 않는다. ‘ㄴ’ 첨가 후 유음화되는 현상은 꼭 기억하자.

**[선택지 해설]**

㉠	발음	[바틀]	발음 → [바틀]
		[바츨]	연음 발음 → 바틀 → [바츨] 연음 구개음화
㉡	넋이	[넉씨]	넋이 → 넉씨 → [넉씨]
		[너기]	연음 넋이 → 넉이 → [너기] 된소리되기
㉢	꿍기고	[끈기고]	자음군 단순화 꿍기고 → [끈기고]
		[곤기고]	연음 꿍기고 → [곤기고] 거센소리되기(축약)
㉣	여덟이	[여덜비]	자음군 단순화 여덟이 → [여덜비]
		[여더리]	연음 여덟이 → 여덜이 → [여더리]
㉤	받은소리	[바튼소리]	받은소리 → [바튼소리]
		[바든소리]	연음 받은소리 → 받은소리 → [바든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연음

14. ㉡

**정답해설** 답은 ㉡야. ‘넋이’를 올바르게 발음해보자. ‘넋이’는 체언 ‘넋’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이’가 왔어. 이에 ‘연음’이 먼저 일어나서 ‘넉씨’가 돼. 중성을 가진 앞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무조건 연음이야. 예를 들어, ‘밥이[바비]’, ‘굳은[구든]’ 등이 있어. 그 다음 안울림소리인 ‘ㄱ’과 ‘ㅅ’이 만나 뒤의 안울림소리인 ‘ㅅ’이 ‘ㅆ’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넉씨]가 돼. 반면, 부정확한 발음인 ‘너기’는 ‘넋이’에서 우선 탈락인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서 ‘넉이’가 된 후 연음이 일어나 [너기]가 돼. 그러므로 [너기]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했다는 것이 틀렸어.

**[오답풀이]**

- ①을 살펴보자. ‘발음’을 올바르게 발음해보자. ‘발음’은 체언 ‘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음’이 왔어. 이에 ‘연음’이 일어나서 [바틀]이 돼. 반면, 부정확한 발음인 ‘바츨’은 먼저 연음이 된 후 ‘바틀’이 되고, 그 후에 교체인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바츨]이 되었어. 이때, ‘구개음화’는 ‘ㄷ, ㅌ’ 뒤에 ‘ㅣ’ 모음이 와야 하는데 이 경우는 ‘ㅌ’ 뒤에 ‘ㅡ’가 오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아니야.
- ③을 살펴보자. ‘꿍기고’를 올바르게 발음해보자. ‘꿍기고’에서는 ‘ㅎ’ 뒤에 ‘ㄱ’이 오고 있어. 중성 ‘ㅎ’ 뒤에 자음이 오면 축약인 거센소리가 일어나. 그래서 [끈기고]가 돼. 반면, 부정확한 발음인 ‘곤기고’는 ‘꿍기고’에서 탈락인 자음군단순화를 적용해 ‘ㅎ’이 탈락한 형태야.
- ④를 살펴보자. ‘여덟이’를 올바르게 발음해보자. ‘여덟이’는 체언 ‘여덟’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이’가 왔어. 이에 바로 연음이 일어나 [여덜비]가 된 거야. 반면, 부정확한 발음인 ‘여더리’는 ‘여덟이’에서 우선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여덜이’가 되고, 그 후 연음이 일어나 [여더리]가 된 거야.
- ⑤를 살펴보자. ‘받은소리’를 올바르게 발음해보자. ‘받은’은 어간 ‘받’ 뒤에 어미이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은’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연음이 되어 [바튼]으로 발음 돼. 반면, 부정확한 발음인 ‘바든소리’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받은소리’가 되었고 그 후, 연음이 되어 [바든소리]가 되었어.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고전시가 [21~24번 지문] [작자 미상, '갑민가']

"생원들 친족은 자취 없이 도망간데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이 또 뭘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이 정해진 법이라"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61p), 사용 설명서(p54)

[작품 '한눈'에 보기]

[작품 구조]									
<b>[EBS 사용설명서]</b>									
• 이 작품에서는 생원(화자 1)과 갑민(화자 2)의 대화를 통해 군역 부담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게 된 갑민의 삶(갑민의 출신 성분, 몰락하게 된 이유, 문제를 극복하고자 행한 노력, 연이은 실패, 새로운 해결 방안의 모색)이 서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사 (생원의 말)	본사-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 (갑민의 말)						결사 (갑민의 말)		
	고향(갑산)을 떠나지 말기를 권함. [EBS수록]	조상의 내력 설명 [EBS수록]	군역을 지게 된 이유 [EBS수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좌절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 모색	
				1. 채삼과 돈피 사냥을 함. [EBS수록]	2.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함.	3. 고소장을 올림.		4. 돈피를 겨우 마련함.	어진 수령이 통치하는 복청으로 떠나고자 함. [EBS수록]
			실패함. [EBS수록]	실패함. (관리들이 돈피를 요구함.)	실패함. (관리들이 신역을 재촉함.)	그 사이 갑민의 아내가 옥살이를 하다가 죽게 됨.	복청 부사와 같은 어진 수령이 갑산에도 나타나기를 기대함. [EBS수록]		
... 뒷부분 '전문들이' 참고하기!!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갑민가」는 함경북도 갑산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형상화한 조선 후기의 가사이다. 이 작품은 타지방으로 도망가는 '갑민'과 이를 만류하는 '생원'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지방 관리의 학정과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당대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보기> point	• 관리의 횡포로 인한 당대 탈향하는 '백성(갑민)'과 이를 만류하는 '생원'의 대화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편'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가)

내 고을의 양반 스릅 타도타관(他道他官) 옮겨 살면  
 천(賤)히 되기 예사여든 본토(本土) 군정(軍丁)\* 슬타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혼 인심에  
 근본(根本) 숨겨 살려 혼들 어디 간들 면할손가  
 초라리 네 스던 곳에 아무케나 뿌리박아  
 칠팔월에 삼을 캐고 구시월에 돈피(獬皮)\* 잡아  
 공채 신역(公債 身役)\* 갇흔 후에 그 나머지 두엇드?  
 함흥 북청 흥원 장스 돌아들어 몰래 팔 제  
 후한 값 받고 파르 니여 살기 요흔 너른 곳의  
 집과 논밭 다시 스고 살림 도구 장만하여  
 부모처주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문

어와 생원(生員)이니 초관(哨官)인지

그던 말습 그만두고 이 니 말습 드러 보소

**[tip] '대화체 형식'**

위 밑줄 친 부분을 기점으로 '갑민'의 말하기가 이어진다. **형식적 특징의 관점에서 보면 청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화체 형식'**이긴 하지만 작품을 살펴보면 실제 내용은 '생원'보다는 '갑민'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전개되고 있다. 즉 <갑민가>의 내용 전개는 오히려 **청증을 말하기의 대상으로 삼는 '연설'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원의 만류'는 갑산민의 체험담 토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역할, 그리고 다소 단조로울 수도 있는 작품의 구성에 입체감을 부여해 흥미를 부여하는 역할 등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중략)

누디봉소(屢代奉祀)\* 이니 몸은 도리 없이 미와 잇고  
 시름업슨 친족들은 조취 업시 도망하고  
 여러 스릅 모든 신역 내 혼 몸에 모도 무니  
 혼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이 정해진 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맞춰 무니 석송\*인들 당할소나  
 약간 농소 전폐하고 삼을 캐러 입산(入山)하여  
 허항령(虛項嶺) 보태산(寶泰山)을 돌고 돌아 츠즈보니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 앞\*이 날 속인다  
 흘일업시 헛되이 와서 팔구월 고추바람\*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山行)하라 하고  
 백두산 등에 지고 강 아래로 내려가서  
 싸리 꺾어 누디\* 치고 앞갈나무로 모닥불 놓고  
 하나님께 축수(祝手)하며 산신(山神)님께 발원(發願)하여  
 물채줄을 갖춰 꽃고 스망\* 일기 원하되  
 니 정성이 부족흔지 스망 기회 아니 붓니

**[EBS 사용설명서] '문제 해결 키'**

이 작품의 작가는 당대 갑산 지역에 살았던 민중으로 '나'(갑민)와 생원의 대화의 내용을 내세워, 갑민과 같은 민중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당대 민중들은 부조리한 수취 제도로 인해 생계의

부담을 안게 되었고, 선정을 베푸는 관리가 부재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었던 것임. 이를 통해 작가는 북청과 같이 수취 제도의 폐해도 없고 선정을 베푸는 관리가 있는 곳이라면 자신과 같은 민중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정을 베푸는 관리의 출현이라는 소망을 비는 대상이 '나라님'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점인데, 이는 '나라님'이 민중들의 삶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나라님께 아뢰자니 구중천문 멀어 있고'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하나님'은 특정 종교의 절대자가 아니라 보편적 신으로 이해해야 한다.

- 작자 미상, 「갑민가」-

- \* 군정: 나라의 명령으로 병역이나 노역(勞役)에 종사하는 장정. / \* 돈피: 담비의 가죽.
- \* 공채 신역: 나라에 내는 세금과 나라에서 부과하는 노역. / \* 누더봉소: 여러 대의 조상의 제사를 받듦.
- \* 석송: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 \* 오? 앞: 오갈피나무의 잎. / \* 고추바람: 살을 에는 듯한 매서운 바람.
- \* 누더: 사방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쌓아 올린 구조물. / \* 스망: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p>이 작품은 창작 시기와 작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 영정조 때(18세기) 성대중이 함경도 북청 부사로 있을 당시 근처 갑산(甲山)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갑산은 변방인 함경남도 북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조선 시대에 삼수와 더불어 유명한 귀양지 중 하나였다. 기온이 낮고 지형이 험준하여 경작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b>신역으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b>. 특히 몰락 양반이나 힘이 없는 민중은 족징(族徵)과 지방 관리의 학정 등으로 신역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는데 이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b>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b>. 이처럼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당대 사회의 모습을 작품 속 갑민의 삶의 모습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현실 비판적인 성격의 가사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갑민과 생원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 형식을 통해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p>	
주제	부조리한 현실 비판	
EBS 사용설명서, 「이것만은 꼭!」		
<b>[포인트]</b> 공간의 대립		
갑산	대조 ↔	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조리한 수령이 다스리는 곳</li> <li>· 군역의 폐해가 존재하는 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진 수령(북청 부사)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곳</li> <li>· 군역의 폐해가 없는 곳</li> </ul>
<p>▶ 공간의 대립을 통해 갑민이 떠나게 된 이유가 정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p>		
EBS 사용설명서, 「Q&A」		
Q.	「갑민가」를 현실 비판적인 성격의 가사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p>현실 비판 적인 성격의 가사란 조선 후기 가사 중에서 당대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내세워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갑민'의 삶을 통해 군정(軍丁)의 폐단이 심했던 18세기에 함경도 '갑산'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비참한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후기 군역이 안고 있는 폐해를 보여 주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당시의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청'과 같이 백성들에게 군역이 공평하게 부담된다면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p>	

**필수 고전 전문 읽기** "이 작품이라면, 이 정도는 봐야 한다."

< 원문 >	< 현대어 풀이 >
어저 어저 저그가는 저 스름으	아아,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行色) 보아니 군 도망(軍士逃亡) 네로구나	네 모습을 보니 군사 도망자로구나
뇨상(腰上)으로 볼죽시면 뵈적숨이 깃문남고	... [EBS] 갈안 보 말하는 객으로 볼 때, 갈안과 같은 사람이 흰색을 알 수 있음 허리 위로 보면 깃만 남은 베적삼을 입고 있고
허리아리 구버보니 헌좁방이 노닥노닥	허리 아래로 굽어보면 헌 훌바지가 너덜너덜하구나
곱장할미 압희가고 전 티발이 뒤에간드	곱은 할미 앞에 가고 절뚝이는 이는 뒤에 간다
십니(十里)길을 할니가니 몇니가서 업쳐디리	십리 길을 하루에 가니 몇 리 가서 엮어지리
내고을의 양반(兩班)사람 툃도툃관(他道他關) 온겨살면	자기 고을에 살던 양반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살면
천(賤)이되기 상스여든 본토군정(本土軍丁)슬타하고	천하게 되기 예사인데 자기 고향의 군역 싫다고
즈니또흔 도망(逃亡)하면 일국일토(一國一土) 혼인심(人心)의	자네 또한 도망가면 한 나라 땅의 한 인심에
근본(根本)숨겨 살녀흔들 어디간들 면흫손가	근본 숨겨 살려고 한들 어디 가서 면할 것인가
츄라리 네스던곳의 아모케나 쏘희박여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
칠팔월(七八月)의 치습(採蔘)하고	칠팔월에는 인삼 캐고
구십월(九十月)의 돈피(獬皮)잡아	구시월에는 돈피(담비의 털가죽) 구하여
공치신역(公債身役) 갑흔후의 그남저지 두엇드?	군역과 부역을 갚은 후에 그 나머지는 두었다가.
함흥북청(咸興北靑) 홍원(洪原)장스	함흥과 북청, 홍원 장사에
도라드러 줌미(潘賣)흫제	돌아들어가 몰래 매매할 때
후? (厚價)받고 파르니여 살기도흔 너른곳의	후한 값 받고 팔아서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스던토(家畬田土)곳쳐스고	집과 논밭 다시 사고
가장즘물(家藏什物) 장문하여	집안 살림 장만하여
부모쳐즈(父母妻子)보전(保全)하고 새즐거물 누리려문	부모처자 지키고 새 즐거움을 누리려무나
<서사>	<서사 : 갑민을 본 생원의 말>

어와 싱원(生員)인디 초관(哨官)인지	어와 생원인지 초관(하급 무관 정도 직위)인지
그디말씀 그만두고 이니말씀 드러보소	그대 말씀 그만 두고 이 내 말을 들어보소
이니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내 또한 갑산 백성이라
이씨의셔 성장(生長)하니 이씨일을 모를소나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이 땅 일을 모르겠느냐
우리조상 남중양반(南中兩班)	우리 조상 남중양반
딘스급테(進士及第) 연면(連綿)하여	진사 급제 끊이지 않아
금당옥패(金章玉佩) 빗기치고 시종신(侍從臣)을 드니다가	금장옥패 비스듬히 차고 시종신(임금을 가까이 하던 높은 벼슬)을 하다가
식기인(猜忌人)의 참소입어 전가스변(全家徙邊) 하온후의	시기하는 이의 참소 입어 집안이 변방으로 귀양간 후에 ... [EBS] 갑민의 조상 내력
국극변(國內極邊) 이씨의셔 칠팔디(七八代)을 스키오니	나라의 끄트머리 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선음(先蔭)이어 하난일이 읍등(邑中)구실 첫지로드	선조의 숨은 덕을 이어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 [EBS] 조상 당에 갑민의 읍중에서 양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었음
드러?면 좌수별감(座首別監) 나?셔는 풍헌감관(風憲監官)	어디를 가든 지방 관청에서는 우두머리만 해와서
유스장의(有司掌儀) 차지하면 테면보와 사양터니	유사 장의(사무나 예식을 맡아보는 일) 재차 나면 체면을 보아 사양하곤 했는데
애슬푸다 내 시절의 원수인(怨讐人)의 모히(謀害)로서	슬프다 내 시절에 와서 원수의 모함에 빠져
군스강정(軍士降定) 되단말? 내한몸이 허러나니	군사로 떨어졌단 말인가 내 한 몸이 하찮게 되니
좌우전후(左右前後) 수드일?(數多一家)	주변의 수많은 일가친척 대신 내가
츄츄충군(次次充軍) 되거고야	차츄차츄 군역을 채우게 되었구나
누디봉스(累代奉祀) 이니몸은 홀일업시 미와있고	대대로 조상 제사를 받드는 나는 할 수 없이 매어 있고
시름업슨 제독인(諸族人)은 조취업시 도망(逃亡)하고	걱정 없는 일가친척들은 자취도 없이 도망가고
여라스롬 모든신역(身役) 내한몸의 모도무니	여러 사람 모든 군역과 부역을 내 한 몸이 모두 물어 내니
한몸신역(身役) 삼양오전(三兩五錢)	한 사람이 물어야 할 군역, 부역은 세 냥 오전이나
돈피이장(獬皮二張) 의법(依法)이라	담비가죽 두 장을 내는 게 정해진 법이라
십이인명(十二人名) 업는구실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合)쳐보면 스십육양(四十六兩)

연부연(年復年)의 맛<sup>ㅌ</sup>무니 석송(石崇)인들 당(當)흠소나

<본사1>

약간농스 전폐(全廢)혀고 치습(採蓼)혀려 입산(入山)혀여

허항영(虛項嶺) 보덕산(寶泰山)을 돌고돌아 츠즈보니

인삼(人蔘) 싹스 전혀업고 오<sup>ㄱ</sup>(五加) 납히 날소긴다

흠일업시 공반(空返)혀여 팔구월(八九月) 고추바람

안고도라 입산(入山)혀여 돈피산행(獬皮山行) 혀라하고

백두산(白頭山) 등의디고 분계강(分界江下) 내려가서

살이췌거 누디치고 익갈나무 우등놓고

혀<sup>ㄴ</sup>님께 축수(祝)하며 산신(山神)님께 발원(發願)혀여

물치출을 ㄱ초곳고 스망일기 원망(願)혀되

니명성(精誠)이 불급(不及)혀디 스망실이 아니부니

<본사2>

빈손으로 도라서니 습디연(三池淵)이 잘참이라

납동(立冬)지논 습일후(三日後)의

일야설(一夜雪)이 스몏오니

대즈깊희 혀마너머 스오보(四五步)를 몏옴길네

양딘(糧盡)혀고 의박(衣薄)혀니 압희근심 다 췌티고

몏숨슬려 욱심(欲心)혀여 디스위헌(至死爲限) 길을혀여

인가처(人家處)를 츠즈오니 검천거이(劍川巨里) 첫목이라

계초명(鷄初鳴)이 이윅(逸)혀고 인<sup>ㄱ</sup>적적(人家寂寂) 혼좁일네

합쳐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맞추어 물어내려니 (진나라의 부자로 이름난) 석송인들 감당하겠느냐

<본사1 : 생원의 말에 대한 갑민의 대답, '친족의 신역'>

약간의 농사 접어두고 인삼 캐러 입산하여

허항령 보태산(백두산 근처 구체적 지명)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가피 잎이 날 속인다

→ [EBS] 채삼에 실과함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팔구월 고추바람

안고 도로 입산하여 담비가죽 산행하려고

백두산 등에 지고 경계의 강 아래로 내려가서

싸리 꺾어 누대 치고 앞길나무 우등 놓고

하나님께 축수하고 산신님께 빌어서

물, 채, 줄을 갖추어 꽃고 사망일기(이익이 많이 남기를) 빌어보지만

내 정성이 미치지 못하는지 사망 기회가 안 붙는구나

<본사2 : 생원의 말에 대한 갑민의 대답, '채삼과 돈피'>

빈손으로 돌아서니 삼지연 호수에서 노숙을 해야 할 판이라

입동 지난 삼일 후에

밤중에 눈이 꽤 오니

다섯 자 깊이 이미 넘어 네땃 걸음을 몏 옴기네

식량이 바닥나고 옷이 얇으니 앞의 근심 다 떨치고

몏숨 구하려고 죽기 살기로 길을 헤아려

인가 있는 곳을 찾아오니 검천거리 첫눈에 보이는구나

첫닭 소리가 그윽하고 인가는 적적하니 한창 자는 중이네

집을 초췌 드러가니 혼비백산(魂飛魄散) 반(半)주검이	집을 찾아 들어가니 혼비백산 반시체가
언불출구(言不出口) 너머지니 더운 구들 익은목의	말도 못하고 넘어지니 더운 구들 아랫목에
송장갓치 누웠든? 인스수습(人事收拾) 후운후의	송장같이 누웠다가 정신을 차린 후에
두발숫흔 구버보니 열가락이 간디업니	두 발끝을 굽어보니 열 발가락이 간 데 없네
간신도리(艱辛調理) 싱명(生命)하여 쇠게실려 도라오니	간신히 조리하고 목숨을 구하여 소에 실려 돌아오니
팔십당연(八十當然) 우리노모(老母) 마도노와 일던물습	팔십 된 우리 노모 마중 나와 하시던 말씀
스르왔든 니즈식이 스망업시 도라온들	살아왔구나 내 자식이 수입 없이 돌아온들
모든신역(身役) 걱정하라	모든 신역 걱정하겠느냐
전토가장(田土家藏) 진미(盡賣)하여	논밭과 집안 살림 모두 팔아
스십육양(四十六兩) 돈?디고 파기소(痍記所) 초췌가니	사십 육 냥 돈 가지고 파기소(병무청)을 찾아가니
동군부통(中軍把摠) 호령(號令)하되	병역 담당자가 호통 치되
우리사도(使道) 분부니(分付內)의	우리 사또 분부하기를
각요군(各哨軍)의 데신역(諸身役)을	각 병사의 여러 병역, 부역세로
돈피(獬皮)외에 붓디몰라	담비가죽 외는 받지 말라 하셨다.
관령녀초(官令如此) 디엄(至嚴)하니 허릴업서 퇴호숫든	관가 명령이 이같이 지엄하니 하는 수 없어 물러나는 구나
돈?디고 물너노와 원명(原情)디어 발괄하니	돈 가지고 물러나와 억울한 사정을 글로 지어 하소연 하니
물위번소(勿謂煩訴) 데스(題辭)하고	번거로운 소송이나 판결을 말라 하고
군노당교(軍奴將校) 차스(差使)노아	군노장교 보내어서
성화(星火)갓티 지촉하니	불같이 재촉하니
노부모(老父母)의 원행치당(遠行治裝)	늙은 부모가 먼길 떠날 때 드릴 행장(물건과 옷)으로
팔승(八升)네필(匹)두엇더니 팔양돈을 비러보고	두었던 팔승(수의용 옷감이 아닐까 짐작함)네 필을 여덟 냥 돈을 빌어서 받고
파라다가 치와니니 오십녀냥(五十餘兩) 되거고야	팔아다가 채워 내니 오십여 냥 되겠구나

삼수각진(三水各鎮) 두로도라	수와 각진을 두루 돌아
니십육당(二十六張) 돈피(獬皮)스니	이십여섯장 돈피 사니
십여일(十餘日) 장근(將近)이라	십여 일 가까이 왔네
성화(星火)갓 관가분부(官家分付)	성화같은 관가 분부
차지(次知)조부 궤도왔니 불상홀스 병(病)든터논	차지(대신 벌 받을 사람)잡아 가두었네 불쌍하구나 병 든 아내는
영오둥(囿圍中)의 더디여서 결항치스(結項致死)헝단말궤	감옥 안에 갇혀서 목을 매어 죽었던 말인가
니집문면(門前) 도라드니 어미불너 우는소리	내 집 문전 돌아드니 어미 불러 우는 소리
구텨(九天)의 스못헝고 의디업슨 노부모(老父母)논	구천에 사무치고 의지할 데 없는 노부모는
불성인스(不省人事) 누어시니 기덜(氣絶)헝온 특시로드	인사불성 누웠으니 기절한 탓이로다
여러신역(身役) 바친후의 시체(屍體)츄츄 장스헝고	여러 신역 바친 후에 시체 찾아 장사지내고
스묘(祠廟)뫼서 썩희못고 이싼토록 통곡(痛哭)헝니	조상 사당에 모시고 땅에 묻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통곡하니
無知微物(무지미물) 못도(鳥)雀(작)이 저도또흔 설니운다	아무 것도 모르는 미물인 참새떼도 같이 서럽게 운다
막중변디(邊地) 우리인싱(人生) 나르백성(百姓) 되어나서	변방에 사는 우리같은 인생은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군스(軍士)슬트 도망(逃亡)헝면	군사 싫다 도망하면
화외민(化外民)이 되려니와	임금 덕을 못 입는 사람이 되지만
헝몸의 여러신역(身役) 무드가 흘세업서	한 몸이 여러 신역 물다가 할 새 없어
또 금년니 도르오니 유리무딩(流離無定) 헝노미라	또 금년이 돌아오니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노라
<b>&lt;본사3&gt;</b>	<b>&lt;본사3&gt;</b>
나라님긔 알외즈니 구둥천문(九重天門) 머러잇고	나라님께 아뢰자니 아홉 겹 대궐문은 멀기만 하고
뇨순(堯舜)갓 우리성주(聖主)	요순 같은 우리 임금
일월(日月)갓티 발그신들	해와 달같이 밝으신들
불沾(침)성화(聖化) 이극변(極邊)의	임금의 성화가 미치지 못하는 이 극한 변방의

복분 <sup>ᄃᆞ</sup> (覆盆下)라 빗칠소냐	복분하라 비치겠느냐(변방지방에는 임금의 성화가 미치지 못한다) ...→ [EBS] 임금의 덕이 강산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 개탄
그디또 <sup>ᄃᆞ</sup> 흔 니말 <sup>ᄃᆞ</sup> 듯소 타관 <sup>ᄃᆞ</sup> 소식(他官消息) 드러보게	그대 또한 내 말 들어보소 타관소식 들어보게
북청부사(北靑府使) 뉘실 <sup>ᄃᆞ</sup> 런고 성명(姓名)은 좁간 <sup>ᄃᆞ</sup> 이저있니	북청부사 누구시던가 성함은 잠간 잊고 있네
허다 <sup>ᄃᆞ</sup> 군 <sup>ᄃᆞ</sup> 명(許多軍丁) 안보(安保) <sup>ᄃᆞ</sup> 고	많은 군정 편히 지키고
빅골 <sup>ᄃᆞ</sup> 도 <sup>ᄃᆞ</sup> 망(白骨逃亡) 해원(解冤)일 <sup>ᄃᆞ</sup> 리	죽어 없어진 이 원한을 풀어주네
각 <sup>ᄃᆞ</sup> 디 <sup>ᄃᆞ</sup> 초 <sup>ᄃᆞ</sup> 관(各隊哨官) 제신 <sup>ᄃᆞ</sup> 역(諸身役)을	각 부대 초관의 여러 신역을
디 <sup>ᄃᆞ</sup> 소 <sup>ᄃᆞ</sup> 민 <sup>ᄃᆞ</sup> 호(大小民戶) 분 <sup>ᄃᆞ</sup> 징(分徵) <sup>ᄃᆞ</sup> 니	크고 작은 민가에 나누어 징수하니
만 <sup>ᄃᆞ</sup> 흐 <sup>ᄃᆞ</sup> 면 닷 <sup>ᄃᆞ</sup> 돈 <sup>ᄃᆞ</sup> <sup>ᄃᆞ</sup> 푼 <sup>ᄃᆞ</sup> 수 <sup>ᄃᆞ</sup> 저 <sup>ᄃᆞ</sup> 그 <sup>ᄃᆞ</sup> 며 <sup>ᄃᆞ</sup> 는 서 <sup>ᄃᆞ</sup> 돈 <sup>ᄃᆞ</sup> 이 <sup>ᄃᆞ</sup> 라	많으면 다섯 돈 정도 적으면 세 돈이라
인 <sup>ᄃᆞ</sup> 읍 <sup>ᄃᆞ</sup> 빅 <sup>ᄃᆞ</sup> 성(隣邑百姓) 이 <sup>ᄃᆞ</sup> 말 <sup>ᄃᆞ</sup> 듯 <sup>ᄃᆞ</sup> 고	이웃 고을 백성 이 말 듣고
남 <sup>ᄃᆞ</sup> 부 <sup>ᄃᆞ</sup> 녀 <sup>ᄃᆞ</sup> 디(男負女戴) 모 <sup>ᄃᆞ</sup> 다 <sup>ᄃᆞ</sup> 드 <sup>ᄃᆞ</sup> 니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며 몰려드니
군 <sup>ᄃᆞ</sup> 명 <sup>ᄃᆞ</sup> 허 <sup>ᄃᆞ</sup> 오(軍丁虛伍) 업 <sup>ᄃᆞ</sup> 서 <sup>ᄃᆞ</sup> 지 <sup>ᄃᆞ</sup> 고	군정허오(군적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없는 군사 행정)없어지고
민 <sup>ᄃᆞ</sup> 호 <sup>ᄃᆞ</sup> 점 <sup>ᄃᆞ</sup> 점(民戶漸漸) 느 <sup>ᄃᆞ</sup> 러 <sup>ᄃᆞ</sup> 간 <sup>ᄃᆞ</sup> 다	민호 점점 늘어간다
나 <sup>ᄃᆞ</sup> 도 <sup>ᄃᆞ</sup> 또 <sup>ᄃᆞ</sup> 흔 이 <sup>ᄃᆞ</sup> 말 <sup>ᄃᆞ</sup> 듯 <sup>ᄃᆞ</sup> 고 우리 <sup>ᄃᆞ</sup> 고 <sup>ᄃᆞ</sup> 을 <sup>ᄃᆞ</sup> 군 <sup>ᄃᆞ</sup> 정 <sup>ᄃᆞ</sup> 신 <sup>ᄃᆞ</sup> 역(軍丁身役)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을 군정 신역(군역과 부역)
북 <sup>ᄃᆞ</sup> 청 <sup>ᄃᆞ</sup> 일 <sup>ᄃᆞ</sup> 례(北靑一例) <sup>ᄃᆞ</sup> 히 <sup>ᄃᆞ</sup> 여 <sup>ᄃᆞ</sup> 디 <sup>ᄃᆞ</sup> 라	군정신역에 대한 북청의 예를 들어
영 <sup>ᄃᆞ</sup> 문 <sup>ᄃᆞ</sup> 의 <sup>ᄃᆞ</sup> 송(營門議送) 정(呈)ᄃᆞ <sup>ᄃᆞ</sup> 말 <sup>ᄃᆞ</sup> 가	관아에 상소를 바쳤으니
본 <sup>ᄃᆞ</sup> 읍(本邑)말 <sup>ᄃᆞ</sup> 겨 <sup>ᄃᆞ</sup> <sup>ᄃᆞ</sup> 테 <sup>ᄃᆞ</sup> 스(題辭)ᄃᆞ <sup>ᄃᆞ</sup> 다	본 고을에 맡겨 제사(관부의 판결이나 지령)를 맡아보는
본 <sup>ᄃᆞ</sup> 관 <sup>ᄃᆞ</sup> ᄃᆞ(本官衙)의 <sup>ᄃᆞ</sup> <sup>ᄃᆞ</sup> 붓 <sup>ᄃᆞ</sup> 치 <sup>ᄃᆞ</sup> 온 <sup>ᄃᆞ</sup> 죽	본 관아에 부치니
불 <sup>ᄃᆞ</sup> 문 <sup>ᄃᆞ</sup> 시 <sup>ᄃᆞ</sup> 비(不問是非) 올 <sup>ᄃᆞ</sup> 여 <sup>ᄃᆞ</sup> 미 <sup>ᄃᆞ</sup> 고 <sup>ᄃᆞ</sup> 형 <sup>ᄃᆞ</sup> 문 <sup>ᄃᆞ</sup> 일 <sup>ᄃᆞ</sup> 츠(刑問一次)ᄃᆞ <sup>ᄃᆞ</sup> 말 <sup>ᄃᆞ</sup> ᄃᆞ	시비는 안 따지고 올려서 매어놓고 형문 한 차례 맞는 단 말인가
천 <sup>ᄃᆞ</sup> 신 <sup>ᄃᆞ</sup> 만 <sup>ᄃᆞ</sup> 고(千辛萬苦) 노 <sup>ᄃᆞ</sup> 녀 <sup>ᄃᆞ</sup> 느 <sup>ᄃᆞ</sup> 셔 <sup>ᄃᆞ</sup> 고향 <sup>ᄃᆞ</sup> 생 <sup>ᄃᆞ</sup> 이(故鄉生涯)ᄃᆞ <sup>ᄃᆞ</sup> 떨 <sup>ᄃᆞ</sup> 치 <sup>ᄃᆞ</sup> 고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서 고향 생활 다 버리고
난 <sup>ᄃᆞ</sup> 리 <sup>ᄃᆞ</sup> 친 <sup>ᄃᆞ</sup> 구(隣里親舊) <sup>ᄃᆞ</sup> 히 <sup>ᄃᆞ</sup> 직 <sup>ᄃᆞ</sup> 업 <sup>ᄃᆞ</sup> 시	이웃친구 하직 못하고
부 <sup>ᄃᆞ</sup> 노 <sup>ᄃᆞ</sup> 휴 <sup>ᄃᆞ</sup> 유(扶老携幼) <sup>ᄃᆞ</sup> 즈 <sup>ᄃᆞ</sup> 야 <sup>ᄃᆞ</sup> 반(子夜半)의	노부모 잡고 아이는 끌고 야밤중에

후티령노(後峙嶺路) 빗겨두고  
금창령(金昌嶺)을 허위너머

단천(端川)싸을 바라지나 성덕산(星岱山)을 너머서면  
북청(北靑)싸이 그아닌가 거처호부(居處好否) 다떨치고  
모든가속 안보하고 신역(身役)업슨 군스(軍士)되세  
니곳신역(身役) 이러하면 이친기묘(離親棄墓) 헝울소냐

<본사4>

비니이다 비니이다 하나님께 비니이다  
충군이민(忠君愛民) 북청(北靑)원님 우리고을 빌이시면  
군명도탄(軍丁塗炭) 그려다가 헌폐상(軒陛上)의 올리리라  
그디또흔 명연(明年)잇씨 쳐즈동싱(妻子同生) 거느리고  
이령노(嶺路)로 잡아들지 굿씨니말 씨치리라  
니심등(心中)의 잇날말슴 횡설수설(橫說豎說) 헝려헝면  
내일(來日)이씨 다지나도 반(半)나마 모자라리  
일모충충(日暮怱怱) 갈길머니 하직헝고 가노미라

<결사>

후치령길 비껴두고  
금창령을 허우적거리며 넘어

단천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을 넘어서면  
북청 땅이 거기 아닌가 거처가 싫고 좋고 다 떨치고  
모든 식구 편히 지키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  
내 사는 곳 신역이 북청 같다면 부모와 이별하고 산소를 버리고 떠나겠느냐

<본사4>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애민 북청원님 우리 고을 들르시면  
군사행정의 비참함을 표현하여 헌폐(임금) 위에 올리겠다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동생 거느리고  
...> [EBS] **감민**은 미래에 생유도 **감민**을 떠나려는 자의 생육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 생육함  
이 고개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우치리라  
내 마음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 다하려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도 모자라리  
해 지고 바빠 갈 길 머니 하직하고 가노라

<결사 : 감민의 소원과 인사>

현대시 [35~37번 지문] [이용악, '오랑캐꽃']

“...우리의 여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양이 여리채를 드리운 오랑캐의 뒷거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298), 사용 설명서(p297)

[작품 '한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것으로 가볍게.”

[작품 해제]						
<p><b>[EBS 사용설명서]</b> 이 작품은 '오랑캐꽃' 이름의 유래를 통해 고려 군사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 간 여진족의 슬픔을 떠올리고, 이를 일제 강점기에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고 <b>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애감과 연결하고 있는 시</b>이다. 화자는 오랑캐꽃의 억울한 처지에 <b>연민</b>을 느끼며 목 놓아 울도록 햇빛을 막아 주는 행위를 통해 <b>위로</b>를 전하고 있다.</p>						
[작품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랑캐꽃' 이름의 유래담을 프롤로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오랑캐가 쫓겨가던 역사적 사실을 현재 우리 민족의 현실과 연결하고 있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b>서두</b></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0 0;">‘오랑캐꽃’ 이름의 유래</p>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b>1연</b></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0 0;">여진족이 쫓겨 가던 상황</p>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b>2연</b></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0 0;">세월의 무수한 흐름</p>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b>3연</b></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0 0;">비극적 이름의 오랑캐꽃에 대한 위로</p> </div>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성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p>이 작품은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화자는 대상의 이름에 대한 유래담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대상과의 정서적 교감을 시도한다.</p>	
<p><b>&lt;보기&gt;</b> <b>poi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의 <b>순우리말 이름에</b> 깃든 유래담으로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나아가 교감을 시도</li> </ul>
<p><b>[tip]</b> 우리나라의 꽃 이름은 순우리말로 붙여진 것이 많으며, 그 이름에 얽힌 설화를 많이 갖는다. 그래서 꽃에 대한 명명(命名) 설화를 통해 시적 동기를 얻는 경우가 많다. 이 작품도 이러한 시적 착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b>오랑캐꽃의 생태와, 명명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기에 ‘서사성을 지니고 있다’고</b> 말할 수 있다.</p>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벽'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양화가 될 수 있다."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운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땃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짜기 골짜기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 Tip 1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대체로 가마가 있었던 자리는 정착지로서 삶의 터전인 반면 '돌가마'는 정주할 곳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이며 '오랑캐꽃'은 뿌리를 내리는 곳 어느 곳이든 삶의 터전이 되는 식물의 생태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햇빛'이 있는 곳은 만천하가 드러나 있는 공개된 장소의 의미를 가지며 이때 햇빛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는 작품 창작 당시 만주 등의 국가로 이주해간 한국인들의 처지를 반영한 표현으로 이주를 간 한국인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상당한 핍박과 무시를 당했다.

#### Tip 2 오랑캐에 대한 인식

형식상으로 1연의 주어인 오랑캐의 모습은 '아낙도 돌볼 새 없이' 그리고 '도래샘도 땃집도 버리고 쫓겨나는' 비참한 모습이다. 원래 오랑캐는 중국에 대해 주변에 살던 종족을 말하는데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고 유랑하는 모습이, 창작 배경을 고려하면 일제 강점기에 유랑하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1연에서의 오랑캐는 다소나마 화자가 연민의 정을 가진 대상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3연에서의 오랑캐는 오랑캐 꽃에 대하여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시적화자의 진술로 볼 때 연민의 대상인 '오랑캐꽃'과 '오랑캐'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유의하자.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 Tip 3 각 연의 서술 방식

1연은 '~갔단다'를 반복함으로써 상대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2연에서는 '~나'와 같이 서술함으로써 시적화자가 회상이나 추정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3연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오랑캐꽃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 이용악, 「오랑캐꽃」 -

\* 도래샘: 빙 돌아서 흐르는 샘물.

\* 털메투리: 털미투리. 털로 짚신처럼 삼은 신.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상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주제	오랑캐꽃에서 떠올린 유이민의 비애와 연민
EBS 사용설명서, 「이것만은 꼭!」	
<p><b>[포인트1]</b> '오랑캐꽃' 이름에 대한 유래</p> <p>'오랑캐꽃'은 '제비꽃'의 다른 이름으로, 화자는 꽃의 생김새와 관련한 유래담을 소개하고 있다. '오랑캐'는 여진족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고려 시대에 함경도 부근에서 살다가 윤관에게 토벌을 당했다. 이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에게 '오랑캐'라는 말은 야만인과 같은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화자는 오랑캐꽃에 의탁해서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자의 설움과 소외 경험을 드러내면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슬픔과 연결하여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고 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gap: 20px;">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오랑캐꽃에 대한 비애감</div> <span>⇒</span>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우리 민족의 비애</div> </div> <p><b>[포인트2]</b> 프롤로그 형식의 시상 전개 방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오랑캐꽃' 이름의 유래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여진족이 우리 민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화자가 오랑캐꽃을 보며 왜 비애감을 느끼는지를 드러냄.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1연이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 형식으로 제시하여 시상 전개 이전에 전제가 되는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여 시의 맥락을 파악하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로 볼 수 있음.             </div>	
<b>'수능특강' &lt;보기&gt;</b>	
오랑캐꽃은 제비꽃의 다른 이름이다. 「오랑캐꽃」의 화자는 꽃의 생김새와 관련한 유래담을 소개하고 비애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오랑캐는 여진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12세기 고려 시대에 함경도 부근에서 살다가 윤관에게 토벌을 당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랑캐라는 말은 야만인과 같은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 시의 화자는 오랑캐꽃에 의탁해서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자의 설움과 소외 경험을 드러내면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슬픔과 연결하여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 있다.	
<b>&lt;보기&gt; point</b>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꽃의 유래담 그리고 그에 따라 연상되는 민족과 연민
<b>발문</b>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답인 선지</b>	② [A](서사 부분)는 대상의 명칭에 대한 유래담을 프롤로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오랑캐꽃'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화자 자신의 과거 경험과 연결하여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다. ⇒ [A]는 대상의 명칭에 대한 유래담을 프롤로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름다운 꽃에 붙여진 이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환기하고 화자의 애석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화자 개인의 과거 경험과 연결하여 비애감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b>EBS Q&amp;A</b>	
<b>Q</b>	3연에서 '오랑캐꽃'에게 화자가 '울어보렴'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b>A</b>	오랑캐꽃을 의인화해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이라고 한 것은 시적 대상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이자, 일제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설움을 겪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오랑캐꽃의 비애감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랑캐꽃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태도는 당대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에 대한 연민과 슬픔으로, 우리 민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 지문** "비교하기, <서사와 시>, 수능 - '2019학년도 유치환, 「출생기」"

(가)

┌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A]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 융희(隆熙) 2년!

┌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B] 지붕에 박년출 남풍에 자라고  
└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뻗은 듯 피어  
┌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C]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 밤마다 사랑에서 저름저름 글 읽으셨다

┌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D]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옥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E]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고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댈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p><b>문제 1</b></p>	<p><b>(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b></p>
<p><b>문제 선지</b></p>	<p>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둬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p>
<p><b>정답 해설</b></p>	<p>① (가)는 '융희(隆熙) 2년'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일제의 강점을 앞둔 1908년의 암울한 시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나)는 '삼월'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봄을 맞이하는 생동감 넘치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p>
<p><b>오답 풀이</b></p>	<p>② (가)는 '지니셨고', '읽으셨다', '지었다오' 등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출생과 관련된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해 전달하고 있지만, (나)는 '온다', '탄다', '덮는다', '지핀다'와 같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삼월의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전달하고 있다.                  ③ (가)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상서롭지 못한', '욕된', '신월같이 슬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나)는 삼월에 눈이 오는 사갈의 마을의 풍경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지만 '봄을 바라고 섰는',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 등의 표현을 보면 주관적 의미의 서술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는 '검정 포대기',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어둔 바람', '욕된 후에', '곡성'과 같은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지만, (나)는 '새로 돋은 정맥', '눈', '올리브빛', '제일 아름다운 불'과 같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생명력 넘치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새로 돋은 정맥',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등의 표현을 통해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는 특별히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p>
<p><b>문제 2</b></p>	<p><b>[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b></p>
<p><b>문제 선지</b></p>	<p>① [A] :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② [B] :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③ [C] :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④ [D] :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⑤ [E] :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p>
<p><b>정답 해설</b></p>	<p>④ '왕고뭇덱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는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D]와 이어지는 행에서 화자를 '욕된 후에'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D]의 서술이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p>
<p><b>오답 풀이</b></p>	<p>①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에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며, 이는 암울하고 음산한 정서를 불러 일으켜 화자가 출생하던 시대적 상황의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1연에 제시된 시대 상황은 암울하고 음산한 것인데 반해, [B]는 남풍에 자라는 박년출, 피 뽕은 듯한 석류꽃 등은 다채로운 계절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p>

	<p>③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읽으셨다'에서 대구 형식이 활용되어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p> <p>⑤ 화자의 울음소리에 출생을 연상하게 하는 '고고'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곡성'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돌메'라는 화자의 이름이 명이 길었으면 하는 할머니의 바람을 담은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p>
<b>문제 3</b>	<b>&lt;보기&gt;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
<b>&lt;보기&gt;</b>	<p>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b>문제 선지</b>	<p>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p> <p>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p> <p>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p> <p>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p> <p>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p>
<b>정답 해설</b>	<p>③ 하얀 '눈' 내리는 '하늘'과, '눈' 덮인 '지붕', '굴뚝'은 흰색 혹은 회색과 같은 무채색 계열의 색감을 지니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밝고 화려한 색감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했다는 ③의 진술은 옳지 않다.</p>
<b>오답 풀이</b>	<p>① &lt;보기&gt;의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p>② 샤갈의 그림에 나타난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나 '당나귀'와 같은 이질적 이미지의 병치가 (나) 시에서는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되어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다.</p> <p>④ 그림 속 '올리브빛'의 이미지는 사나이의 얼굴에 나타난 것인데, 시인은 '올리브빛'을 봄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겨울 열매들'이 그렇게 물든다고 하여 생동감 넘치는 봄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p> <p>⑤ '아낙', '아궁이'는 샤갈의 그림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적 이미지로, 시인은 이를 통해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시인의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키고 있다.</p>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 사회[25~30번 지문][행정 처분과 취소 소송]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행정 기관은 법 집행 기관으로서 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행정 행위를 한다. 그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보통 처분이라고 한다.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허가를 내 주는 것,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내 주는 것, 영업 정지를 명하는 것 등이 행정 처분의 예이다.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운전면허 발급이나 건축 허가와 같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 영업 정지처럼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침익적 처분이라고 한다.

처분이 언제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모든 처분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하는데, 원고적격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승소할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 ㉠ 발생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은 침익적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에게 주어진다.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의 주인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리고 침익적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경우에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현재’란 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위의 예시에서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영업 정지 기간이 ㉡ 종료되었다면 법원은 영업 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또 처분이 있은 지 1년이 ㉢ 경과할 때까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이후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를 처분의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과가 수익적인 동시에 침익적일 수도 있다. 건축 허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이지만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근방의 주민들에게는 침익적이다. 이러한 경우, 처분의 근거인 법률 조항에 제3자의 이익도 고려할 것이 ㉣ 명시되었다면 이때는 제3자도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건축 허가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은 생활 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건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축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의 상대방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 허가는 수익적 처분인 동시에 침익적 처분인 복효적 행정 처분에 해당하고 인근 주민들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 이웃 소송이라고 한다.

또한 기존에 이미 다른 행정 처분으로 인해 ㉥ 형성된 이해관계가 새로운 처분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다. 가령 A가 시내버스 사업 면허 처분을 받아 회사를 운영 중인데, 같은 지역 내에 B 또한 시내버스 사업 면허 처분을 발급받았다고 하자. 이때 B의 면허를 발급한 처분이 근거하는 법률에서, 기존에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익도 고려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A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시내버스 사업 면허의 근거 법률에서는 시내버스 사업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문제가 된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의 형태를 ㉦ 경쟁자 소송이라고 한다.

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취소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꼭 필요한 권리가 구제되지

않아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 소송법은 취소 소송의 요건을 두어,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처분이 실제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하도록 정한다.

###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행정 기관은 법 집행 기관으로서 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행정 행위를 한다. 그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보통 처분(C)이라고 한다.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허가를 내 주는 것,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내 주는 것, 영업 정지를 명하는 것 등이 행정 처분의 예」이다.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운전면허 발급이나 건축 허가 와 같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C), 영업 정지처럼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침익적 처분(C)이라고 한다.

####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1문단에 나온 개념은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서 넘어가야 합니다. 총위가 다른 세 개의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처분’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 행위

1) 수익적 처분 :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

2) 침익적 처분 :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처분

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와 연결해서 이해해 봅시다. 먼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처분의 상대방(운전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니, 수익적 처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식당을 운영하도록 사업 허가를 내 주는 것과 건축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처분 당사자(식당주인, 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니 수익적 처분이 되겠지요. 반면 영업 정지를 명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니 침익적 처분이 됩니다.

처분이 언제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취소 소송(C)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모든 처분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원고적격(C)이라고 하는데, 원고적격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승소할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은 침익적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에게 주어진다.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의 주인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리고 침익적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경우에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현재’란 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위의 예시에서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영업 정지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법원은 영업 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또 처분이 있는 지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이후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를 처분의 불가쟁력(C)이라고 한다.

####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처분은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장을 읽고 위에서 읽은 ‘침익적 처분’이 떠올랐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모든 국민이 모든 처분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③ 이 원고적격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승소할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막힌 학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통으로 읽어서 이해하기 힘든 문장은 끊어서 읽어야 합니다.

‘원고적격은 /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승소할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자 / 에게만 주어진다.’

즉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그 처분이 취소가 되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처분과 관련 없는 사람, 혹은 처분이 취소되어도 이익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원고적격을 부여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④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제자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예시(㉠)를 함께 주었습니다. 예시가 나오면 활용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이 있습니다. 이 처분은 식당 주인(처분 상대방)에게 침익적이지요. 식당 주인은 취소 소송을 해서 승리하면,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고, 영업 정지 처분이 취소되면 장사를 다시 할 수 있으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은 원고적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⑤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 외에도 조건이 두 개 더 둘 다 '기간'에 관한 조건입니다.

1. 침익적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에 존재해야 한다.
2. 처분이 있는 지 1년 이내여야 한다.

앞에서 식당 주인의 예시를 통해 이해했으니, 이번에도 같은 예시에 적용해 봅시다.

위 예시에서의 식당 주인이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영업 정지 기간은 6개월간 지속됩니다. 그럼, 처분을 받자마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영업 정지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또한 처분이 내려지고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인데, 이를 처분의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읽은 세 개의 조건을 모두 합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하고(=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이어야 하고),
2. 취소 소송 판결 내려지기 전에 처분 기간이 끝나면 안 되고,
3. 처분 판결 난지 1년 이내여야 한다.

자격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자격을 얻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과가 수익적인 동시에 침익적일 수도 있다. 건축 허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이지만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근방의 주민들에게는 침익적이다. 이러한 경우, 처분의 근거인 법률 조항에 제3자의 이익도 고려할 것이 명시되었다면 이때는 제3자도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건축 허가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은 생활 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건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축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의 상대방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 허가는 수익적 처분인 동시에 침익적 처분인 복효적 행정 처분(C)에 해당하고 인근 주민들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이웃 소송(C)이라고 한다.

####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법 지문에서는 '원칙-예외' 관계가 자주 제시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 지문을 읽을 때는 원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외가 제시되었을 때 집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외는 항상 예외를 만들어내는 상황과 함께 제시됩니다. 즉 '~라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한다'와 같이 제시된다는 뜻입니다. 예외와 예외를 만들어내는 상황 역시 연결해서 파악해줄 필요가 있겠지요.

② 첫 번째 예외는 처분의 효과가 수익적인 동시에 침익적인 경우입니다. 문단 마지막에 나온 용어를 쓰면 '복효적 처분'이 됩니다. 예외 상황으로 제시된 것은 '건축 허가'에 관한 상황입니다. 건축 허가 처분이 나게 되면, 처분 상대방인 건물주에게는 수익적이지요. 하지만 인근 주민들, 즉 제3자에게는 침익적입니다. 옆집에서 공사를 하면 소리도 크고, 먼지가 많이 날려서 빨래도 밖에 못 널고, 여러모로 괴롭지요.

③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적, 침익적의 주체입니다. 하나의 대상에게 수익적인 동시에 침익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수익적, 다른 누군가한테는 침익적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건물주 = 수익적 처분 / 제3자 = 침익적 처분

④ 이런 경우에는 제3자, 즉 건축 허가 처분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인근 주민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이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앞 문단에서 얘기했던 '원고적격'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예외적이지요.

- 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건축 허가 처분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의 ‘생활 환경을 해치는 건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 ⑥ 복효적 처분에, 법적인 근거까지 있으니, 인근 주민은 건축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외, ‘이웃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기준에 이미 다른 행정 처분으로 인해 형성된 이해관계가 새로운 처분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다. 가령 A가 시내버스 사업 면허 처분을 받아 회사를 운영 중인데, 같은 지역 내에 B 또한 시내버스 사업 면허 처분을 발급받았다고 하자. 이때 B의 면허를 발급한 처분이 근거하는 법률에서, 기준에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익도 고려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A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시내버스 사업 면허의 근거 법률에서는 시내버스 사업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문제가 된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의 형태를 **경업자 소송(C)**이라고 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두 번째 예외 상황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에 이미 다른 행정 처분으로 인해 형성된 이해관계가 새로운 처분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황과 함께 제시해 주었으니,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 1) 기존의 행정 처분 : A의 시내버스 사업 면허 처분
- 2) 기존의 행정 처분으로 인해 형성된 이해관계 : A가 시내버스 사업을 하고 있음



3) 새로운 행정 처분 : B의 시내버스 사업 면허 처분



변경되는 지점 : A 혼자 하고 있던 시내버스 사업에 경쟁자 B가 끼어들게 됨 ⇒ A의 이익이 분산되는 꼴(=침익적)

② 이런 경우에 A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건이 붙습니다. ‘이웃 소송’에서처럼 이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 A는 B의 면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경업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③ ‘이웃 소송’과 ‘경업자 소송’, 예외 상황이 두 가지 제시되었는데, 얼핏 보서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가 비슷해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달라 보이기도 하고, 공/차 정리 훈련하기 좋은 지문입니다. 둘을 묶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통점	처분 당사자 외에 제3자의 이익이 고려된다(=제3자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 제3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원고가 될 수 있다). ⇒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차이점	이웃 소송	경업자 소송
	이번에 내려진 처분의 효과 1. 처분 당사자 : 수익적 2. 제3자 : 침익적 = 관련 처분 1개	기존 처분 당사자(=제3자) VS 이번에 내려진 처분 당사자 = 관련 처분 2개

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취소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꼭 필요한 권리가 구제되지 않아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 소송법은 취소 소송의 요건을 두어,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처분이 실제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하도록 정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2-4문단에서 설명한 취소 소송의 원칙과 예외의 각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소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당연한 말들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자연스럽게 읽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법 지문 읽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2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현재의 고달픈 처지가 반전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은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과 일체감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나'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은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었던 고사의 인물을 떠올리며 '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민가」는 함경북도 갑산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형상화한 조선 후기의 가사이다. 이 작품은 타지방으로 도망가는 '갑민'과 이를 만류하는 '생원'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지방 관리의 학정과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당대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① '양반'도 '타도타관 옮겨 살면 / 천히 되기 예사'라고 하는 것에서, '생원'이 도망가는 '갑민'을 말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 ② '갑민'에게 '네 스던 곳에 아무케나 뿌리박'고 살라는 것으로 보아, '생원'은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인물인 것 같아.
- ③ 도망간 '친족들'의 '신역'까지 '갑민'이 감당해야 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대의 백성들은 고향에 남아 있던 사람이 도망간 사람들의 세금까지 내야 했던 것 같아.
- ④ '갑민'이 '농스 전폐하고 삼을 캐'려 했으나 '헛되이' 돌아왔다는 것으로 보아, 삼을 캐서 세금을 내라는 '생원'의 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충고인 것 같아.
- ⑤ '입산'을 하고 '고추바람'을 맞으며 '돈피 산행'을 한 것으로 보아, '갑민'은 세금을 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

23.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실망감을 초래하는 계기이고, ㉡는 '나'가 세상과 불화하게 되는 계기이다.
- ② ㉠은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줄 대상이고, ㉡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화자가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고, ㉡는 '나'가 느끼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은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자연물이고, ㉡는 '나'가 사태의 실상을 파악하게 되는 단초이다.
- ⑤ ㉠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고, ㉡는 대상을 올바르게 지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이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야구도하기」에서 필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각 기관이 외부의 사물 즉 외물에 현혹되기 쉬움을 드러내어 감각 기관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외물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 ①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피다가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은, 눈이 강물에 현혹되어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낮에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거나 밤에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필자가 강을 건너는 동안 감각 기관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된다는 것은, 감각 기관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추락할 것을 각오'함으로써 강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위험은 마음이 만들어 내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필자의 깨달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걱정' 없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필자가 마음을 다스려 외물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군.

[25~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정 기관은 법 집행 기관으로서 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행정 행위를 한다. 그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보통 처분이라고 한다.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허가를 내 주는 것,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내 주는 것, 영업 정지를 명하는 것 등이 행정 처분의 예이다.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운전면허 발급이나 건축 허가와 같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 영업 정지처럼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침익적 처분이라고 한다. **수익적 처분** ← 침익적 처분  
 처분이 언제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모든 처분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하는데, 원고적격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승소할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 발생하여 자에게만 주어진다.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은 침익적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에게 주어진다.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의 주인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리고 침익적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경우에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현재'란 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위의 예시에서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영업 정지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법원은 영업 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또 처분이 있는 지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이후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를 처분의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26-⑤ → 불이익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과가 수익적인 동시에 침익적일 수도 있다. 건축 허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이지만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근방의 주민들에게는 침익적이다. 이러한 경우, 처분의 근거인 법률 조항에 제3자의 이익도 고려할 것이 명시되었다면 이때는 제3자도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건축 허가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은 생활 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건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축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의 상대방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 허가는 수익적 처분인 동시에 침익적 처분인 복효적 행정 처분에 해당하고 인근 주민들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① 이웃 소송이라고 한다.

27-④ →

또한 기준에 이미 다른 행정 처분으로 인해 형성된 이해관계가 새로운 처분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다. 가령 A가 시내버스 사업 면허 처분을 받아 회사를 운영 중인데, 같은 지역 내에 B 또한 시내버스 사업 면허 처분을 발급받았다고 하자. 이때 B의 면허를 발급한 처분이 근거하는 법률에서, 기준에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익도 고려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A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시내버스 사업 면허의 근거 법률에서는 시내버스 사업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문제가 된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의 형태를 ③ 영업자 소송이라고 한다.

27-④ →

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취소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꼭 필요한 권리가 구제되지 않아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 소송법은 취소 소송의 요건을 두어,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처분이 실제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하도록 정한다.

26-④ →

요건 충족 → 위법성 판단 → 26-③  
소송 각하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 ① 수익성과 침익성을 기준으로 행정 처분을 분류한 뒤, 행정 처분의 침익성이 인정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침익성이 인정되는 요건은 없음
- ②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소개한 뒤, 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상반된 견해와 절충한 새로운 견해 모두 나오지 않음.

- ③ 행정 처분의 근거 법률이 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분석한 뒤,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문제점 분석 & 해소 방안 둘 다 X
- ④ 행정 처분의 의미를 제시한 뒤,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가능한 사례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V
- ⑤ 행정 기관에 따라 담당하는 행정 처분의 종류가 상이함을 제시한 뒤, 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필요한 요건이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 종류가 상이하다 & 요건 달라짐 → 둘 다 없음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 ① 행정 기관이 행정 행위를 할 때에는 법에 의거한다. V → 행정 법치
- ② 행정 처분은 해당 처분이 있는 지 1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X → 이런 말은 없었다. 1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지, 이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다.
- ③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된다. V
- ④ 행정 소송법에서 취소 소송의 요건을 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V
- ⑤ 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 해당 처분의 시효가 종료되면 취소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V

4 ①, ③, ④, ⑤ : 모두 지문에 직접적인 근거 존재. (포기해두었음)

→ 공통점 & 차이점 파악.

27.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 ① ㉠이 허용되는 경우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상대방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V → 위고적격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 주어지므로
- ② ㉡에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V → A와 B의 사례를 예로 들면, B는 면허를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음.
- ③ ㉠과 ㉡은 모두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야 허용된다. V → 인근 주민, A
- ④ ㉠과 ㉡은 모두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야 허용된다. V → 지문에 근거
- ⑤ ㉠과 ㉡은 모두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보다 선행하는 기준의 처분에 의해 형성된 이해관계가 있어야 허용된다. X

→ ㉡은 맞는데, ㉠은 수익적 & 침익적 처분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이므로 선행하는 기준의 처분이 없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보 기>  
일반 국민은 누구나 도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 기관에서 도로 용도 폐지 처분을 내리더라도 일반 국민이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없다. 그러나 도로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강화된 사용권이 인정되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이때 영업적 이익을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행위는 강화된 사용권의 한계를 넘는다고 본다.

→ 일반 국민 → 원고적격 X.

도로 인근의 주민 → 위고적격 O. 그러나 영업적 이익이 목적이라면 X.

일반 국민은 해당 처분에 대해 원적격이 없으므로 침익적 상대방이 아니다.

- ① 도로 용도 폐지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일반 국민이다. X
- ② 도로에 대한 인근 주민의 권리 중에는 도로를 활용한 영업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V → "강화된 사용권의 한계를 넘는다" → 추론 가능
- ③ 도로 인근의 주민에게 도로 용도 폐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X → 강화된 사용권 인정 처분의 위법성 다를 수 있다.
- ④ 도로 용도 폐지 처분은 일반 국민과 도로 인근 주민들에게 동일한 침익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X → 원고적격의 유무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 동일 X.
- ⑤ 도로 인근의 주민이 도로 용도 폐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판결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원고적격은 유지된다. X

나 도로 '인근'의 주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에므로 판결이 성립하는 시점에 도로 인근에 살지 않게 되면 원적격 박탈 (2문단 참고)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

<보 기>

행정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정기적으로 각 지역 토지의 가치인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처분을 내린다. 국가는 공공시설 등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 수용 결정 처분을 한 뒤 소유자로부터 공시지가에 토지를 매수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수용 결정이 있는 후에야 공시지가를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 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가능 기간이 지난 후,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 토지 수용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유로 토지 수용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원은 공시지가 산정이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동시에 토지 수용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 구제 방안을 넓히고 있다. 나 소유자의 원고적격 인정.

2번 선지 근거 침익적 효과

- ① 공시지가 산정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침익적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론이겠군. X
- ② 공시지가 산정은 토지 수용 결정 처분 이후에야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에게 침익적 효과가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한 결론이겠군. → 보기에 근거.
- ③ 토지 수용 결정은 공익과 관련된 처분으로 근거 법률에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고려한 결론이겠군. X
- ④ 토지 수용 결정은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성만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론이겠군. X → 토지수용 결정 X. → 공시지가 산정이 처분의 불가쟁력.
- ⑤ 공시지가 산정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이 토지 수용 결정 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결론이겠군. X

→ ③, ⑤ : 이 두 경우에서는 소유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해당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30.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 생기는
- ② ㉡: 끝났다면
- ③ ㉢: 지날
- ④ ㉣: 밝혀졌다면
- ⑤ ㉤: 이루어진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가 드러나 알려지다" → 다음. 명시되다 :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황 소저와 위 부인은 벽성선을 죽이려 한 음모가 발각되어 추자동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황 소저가 마음속으로 두려워 겁을 먹고 있을 때였다. ㉠ 갑자기 한바탕 음산한 바람이 창틈으로 불어 들어오더니 등불을 꺼뜨리면서, 창밖에 사람 그림자가 번뜩하는 것이었다. 황 소저는 깜짝 놀라 크게 울부짖으며 땅에 엎어져 기운이 막혔다. 이때는 이미 사오경이 지난 시간이었다. ㉡ 서산에 기울었던 달이 나무 그림자를 옮기면서 창밖에 비친 것이었다. 위 부인과 도화가 황 소저의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깨어나 그녀를 부축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황 소저는 그제야 정신을 수습하여 어머니 위 부인을 불렀고 말하였다.

"어머니, 자객이 창밖에 왔어요."

위 부인이 꾸짖어 말하였다.

"우리 딸이 무슨 까닭에 이런 황당하고 어지러운 말을 하는 게냐?"

황 소저는 다시 대답하지 않고 마음이 아득해지는 것이었다. 얼마 뒤 다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벽성선은 죄가 없으니 죽이지 마시고 이 자객을 가라고 하세요!"

위 부인이 즉시 촛불을 밝히고 소리를 쳤다.

"애야, 꿈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라. 네 어미가 여기 있다. 자객이 어찌 여기에 온단 말이나?"

그 후로 황 소저는 잠을 자다가 놀라고 깨면 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점차 살이 빠지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어느 날, 밤이 깊은 뒤였다. 황 소저가 갑자기 어머니 위 부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소녀의 병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죽더라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신 딸아이가 시택에 큰 죄를 얻어서 쫓겨난 여자라는 이름을 씻을 수가 없네요. ㉢ 어머니님은 딸자식을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잘 챙기세요. 소녀가 불효하여 부모님의 맑은 덕을 손상시켰으니 죽어서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하겠어요."

말을 마치고 다시 한번 울부짖더니 기절을 하였다. 위 부인이 손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

"늦게 얻은 딸아이가 재주 있고 민첩해서 오래 살아 복을 모두 누리고 영광을 보는가 했더니,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싶구나."

㉣ 황 소저가 눈을 뜨고 위 부인을 이윽기 바라보다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소녀가 이제 한 가닥 남은 목숨을 끊는다면 아득한 인간사를 잊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두 가지 마음에 품은 것이 있어요. 하나는 연왕이 소녀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연왕을 저버린 것입니다. 벽성선이 소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소녀가 벽성선을 해치려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연왕과 벽성선의 일을 입에 올려서 소녀의 혼백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두 번째는 소녀가 죽은 뒤에 황씨 문중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